

## 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(ICL)’ 상환의무

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(ICL)은 대출시점부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 합니다.

### 원리금 상환유예

상환의무는 대출시점부터 발생하지만,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.

### 의무적 상환

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, 국세청에서 의무상환액을 계산하여 통지·고지합니다.

※ 전자송달 신청으로 간편하게 정보를 받아보세요.  
icl.go.kr ▶ 민원신청 ▶ 전자송달이용 신청



### 자발적 상환

매 학기 금리가 변동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(ICL)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이 시작되지만, 누적되는 이자가 부담이 되신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콜센터(1599-2000)를 통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.

##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(ICL)자 여러분

# 해외이주·유학 예정이라면 출국 전 반드시 해외이주·유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



## 해외유학생 신고 및 상환의무

### 신고의무

- ▶ 해외로 유학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전까지 유학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



#### 신고대상

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·기술을 연구(연수) 하는 것



#### 증빙서류

본인의 이름과 유학기간이 표시된 공적기관 발급 서류



#### PC

학자금 대출 > 학자금 बैं킹 >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 > 해외이주/유학신고



#### 모바일 앱

서비스 > 학자금 대출 > 해외이주/유학신고 > 신고하기

- ▶ **유학계획변경 신고** |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

- ▶ **귀국 신고** | 유학 종료 후 귀국 즉시 재단 홈페이지(앱)을 통해 신고 (출입국증명서 업로드)

※ 귀국 신고를 완료해주셔야 기등록된 보증인이 해제처리 되며, 전액상환 대상자에서 제외됨

### 상환의무

- ▶ 유학 신고 완료한 해외유학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(ICL)의 상환방식 유지

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유예 (2023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: 1,621만원 / 총급여기준 2,525만원)

- ▶ **학업종료 예정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신고하지 않을 경우**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(ICL) 전액상환 의무부과

## 해외이주자 신고 및 상환의무

### 신고의무

- ▶ 해외로 이주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계획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고 '전액상환' 또는 '보증인 입보 후 분할상환약정' 체결



#### PC

학자금 대출 > 학자금 बैं킹 >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 > 해외이주/유학신고



#### 모바일 앱

서비스 > 학자금 대출 > 해외이주/유학신고 > 신고하기

### 상환의무

- ▶ 해외이주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상환



#### PC

학자금 대출 > 학자금 बैं킹 >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 > 중도상환 > 전액상환

- ▶ [전액상환불가시] 보증인 입보 완료 후 분할상환 전환약정 체결



#### 보증인 입보방법

'연대보증 신청서'(보증인의 서명 또는 인감날인 필요) 및 '증빙서류(보증인 "본인서명사실확인서" 또는 "인감증명서", 보증인 신분증 사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)'와 함께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지역센터에 방문



#### (PC) 분할상환 전환약정

학자금 대출 > 학자금 बैं킹 > 학자금 대출 상환  
▶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전환약정 신청